

財務會計關聯 制度運營 質疑回信

최 두 선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질의 1】

적격대상자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에서 서류제출요구서포기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발주기관에서 서류제출을 동시에 요구한 경우로서 선순위 입찰자의 낙찰이 확실한 경우 포기서 제출 가능함. 그러나 선순위 입찰자로서 낙찰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포기서 제출이 불가능함. ※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됨

【질의 2】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회 신

의무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는 기관은 광역시도 및 소속기관, 시·군·구 및 읍·면·동과 그 소속기관임. 기타 교육부 지도감독을 받는 교육청, 초등학교, 지

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사·공단 등은 당해기관에서 적용받은 관계법령 또는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질의 3】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이라 함은 무엇인가?

회 신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자료의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며, 평가요소가 아닌 면허취득일은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의 적용을 받지 않음.

【질의 4】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 일부실적은 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일부실적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각각 합산하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협회에서 자료를 관리하는 업체는 협회에 신고된 실적만을 인정하며, 협회에서 자료가 관리되지 않는 업체는 과거 발주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귀 질의 와 같이 협회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는 없음.

【질의 5】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 금액은 협회발급실적과 직접 발주기관에서 증명받는 실적 모두가 인정시점이 동일한 것인지?

회 신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시에는 협회발행실적과 개인별로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의 내용과 인정시점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임.

【질의 6】

복합공사로서 복합등록 또는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 시공비율산정방법?

회 신

당해공사가 복합공사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주공사로 하며, 주 공사의 업종이 평가대상업종이 되며(2개 이상 업종을 평가대상업종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고에 명시해야 함. 시공비율 산정은 평가대상업종이 아닌 공사예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대상업종의 공사예정금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해야 함.

【질의 7】

공동수급체 평가시 당해업체의 공사예정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회 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산정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업체의 시공비율에 공사예정금액을 곱하여 당해업체의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시공비율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임.

-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법”이라 한다)적용을 받는 추정가격 30억원(전문공사 3억원)이상 공사 건설법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되며,
- 건설법적용을 받는 추정가격 30억 이상(전문공사 3억원 이상)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지역업체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질의 8】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지역가산 평가는?

회 신

지역소재업체 합산(공동도급의 경우에 한함) 시공비율이 10%이상일 때, 합산비율의 1/2 만큼을 각 심사분야(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가산평가하는 것임(가산

비율의 상한은 15%임). 다만, 지역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그 지역업체의 가산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되 가산비율은 18%를 초과할 수 없음.

【질의 9】

2개 이상의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체와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가 같이 있는 경우의 지역가산 평가는?

회 신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의 가산비율부터 우선하여 산정함.

【질의 10】

적격심사에서 동일한 입찰가격이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은?

회 신

가격이 동일한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행능력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질의 11】

적격심사시 부도상태에 있는 업체는 경영상태 평가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부도상태란?

회 신

업체의 부도상태 여부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상법, 어음수표법, 기타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업체의 재무상태, 주거래은행 당좌거래가능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발주처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질의 12】

두 개 법인이 합병된 A업체는 합병등기일 2000년 9월 5일, 결산기준일 9월 5일, 입찰공고일 9월 30일인 경우에 합병한 A업체는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작성한 새로운 결산서로 경영상태 평가가능여부?

회 신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결산서는 등기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해야 함. 따라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등기(9. 5)가 이루어지고 결산기준일(9. 5)이 입찰공고일(9. 30) 이전이라면 동 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가 가능함.

【질의 13】

신규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 작성기준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공고일 이후라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면 가능한지?

회 신

최초 결산서 작성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는 경영상태평가가 불가능함.

【질의 14】

정부투자기관기본관리법에 의거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인정 가능여부?

회 신

정부투자기관의 출연기관으로부터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현행 예규상 가점인정 대상이 아님.

【질의 15】

광역시의 시장(市長)표창을 받은 경우 가산점 인정가능여부?

회 신

시장표창은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 16】

경영상태 평가시 합병한 업체는 새로운 결산서로 평가하는 바 합병업체에 있어서 동종업종간의 합병이 아닌 건설업종과 기타(제도·전기·기타 등) 업종과의 합병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건설업종간의 합병뿐만 아니라 건설업종과 다른 업종과의 합병도 적용대상이 됨.

【질의 17】

- A씨는 B사에서 '96년10월 ○○시의 공사입찰과 관련 뇌물공여건으로 '98. 12월 기소되어 '99. 5. 20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판결받았고 관련 공무원도 실형을 확정집행중임.
- 이와 관련 A씨와 B사는 발주처에서 어떠한 제재도 받은 적이 없음. 이 경우 A씨가 우리회사 대표이사로 취임시 신인도 평가기준 4항의 감점기준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입찰 및 계약질서 위반자”라 함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사실을 발생시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따라서 A씨가 현재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당해 지자체에서 관계공무원 징계처분을 받도록 원인제공을 한 후 다른 회사의 대표자가 되어 입찰에 참가했다면 감점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 18】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한 공사에서 지역업체끼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거나 지역업체가 대표사로 구성된 경우에 그 지역업체가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한 경우에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모두 인정하는지?

회 신

지역업체끼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거나 대표사가 지역업체라도 시공능력공시액 초과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시공비율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임.

【질의 19】

평가대상업종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복합공사의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 평가방법은?

회 신

최근 3년간 실적평가지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을 별도 명시하지 않았다면 발주하고자 하는 업종을 모두 평가해야 할 것임.

【질의 20】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은 실적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이라 함은?

회 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여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시설물을 인수한 경우를 말함.

【질의 21】

○○교육청에서 발주한 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입찰에 학교건축물 보수실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실적인정가능 여부?

회 신

보수공사실적은 신축공사 발주시 시공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없음

【질의 22】

“묘지공원 조성공사”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및 공사관련 서류에서 면적이 423,441㎡이나 준공후 재검토 결과 지적상의 오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410,130㎡로 면적이 확인됨. 이 경우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시 시공규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신

① 시공실적 인정은 “자기책임하에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를 준공한 시공실적”을 의미하여 이 경우 “시공실적”이라 함은 준공검사 서류상의 실적과 실제상의 실적이 동일함을 의미함. 질의와 같은 경우 시공실적이 준공서류상의 면적과 실제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상의 면적에 해당되는 410,130㎡ 실적만 인정됨.

② 참고로, 동 예규 <별표 9>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나 공공기관에서 증명한 시공실적증명서를 당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할 때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의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회사에 있음.

